

서울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1나2021379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방수

변 론 종 결 2021. 12. 1.

판 결 선 고 2022. 1. 28.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2456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5,231,67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2. 3.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231,6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D 관련 부분은 위 피고들에만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되, 편의상 주식회사 A은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취소청구 부분1)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3. 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3.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9. 4. 30.부터 같은 해 9. 18.까지 B에게 합계 76,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을다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가 B로부터 받은 차용증에 변제기와 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현금을 인출한 금액과 시기가 피고가 B로부터 받은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및 영수증 작성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사실, ③ 피고와 B 사이의 금전거래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증거들과 을다 제3, 4, 7, 8,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B로부터 2019. 4. 30. 34,000,000원을, 2019. 7. 29. 25,000,000원을, 2019. 9. 18. 17,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B가 2019. 9. 30. 76,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은 점, ② 피고가 자기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9. 4. 25. 6,000,000원을, 2019. 4. 26. 3,000,000원을, 2019. 7. 18. 15,000,000원을 각 인출하고, 2019. 7. 24. 10,000,000원을 B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내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③ 위와 같은 현금 인출 또는 송금 액수 및 시기가 영수증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B와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이 신빙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B가 피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 이자 및 변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피고와 B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및 경위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상 선순위근저당권으로 확인되는 주식회사 E의 대출금 채권 외에 B가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B가 연대보증을 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인 2019. 12. 23.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에 관한 기한 연장을 받기까지 하였던 바,

피고로서는 B와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발생 가능성 및 그 규모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B가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부분과 B의 며느리 및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2019. 4. 30.자 대여금 34,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등을 통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대여금 중 5,500여만 원을 변제받았다) 추가로 돈을 대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가 2019. 4. 30.자 대여금 34,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추가로 대여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신용상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55,231,67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5,231,6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현, 판사 박성준, 판사 천지성

목 록

1. 부동산

1동의 건물의 표시

속초시 I, J에 있는 K건물 L동

[도로명주소] 속초시 M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N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84.990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1. 속초시 I 대 12664.1㎡

2. 속초시 J 대 343.4㎡

대지권 종류 : 1,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3007.5분의 49.4989

2. 채권

B와 D가 2020. 1. 28.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가 D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잔금채권 중 4,100만원. 끝.

1) 제1심법원은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